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성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7472

발의연월일: 2022. 9. 22.

발 의 자:김성원·김용판·김정재

김희곤 • 박대수 • 박성민

배현진 • 이양수 • 이종배

이주환 · 이헌승 · 정찬민

조명희 • 최영희 • 태영호
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침수피해가 발생한 서울 서초구, 동작구 등은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돼 선포 기준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발생함.

현행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시·군·구(재정력지수 0.6 이상 기준)의 경우 피해액이 105억 원이 넘어야 하고, 읍·면·동은 10억 5,000만 원 이상이어야 함.

하지만, 실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·어업·임업·염생산업 및 소상공인 시설은 피해액에 산정되지 않아 관련 시설 밀집지역은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되며 국비 지원 및 공공요금 감면 등의혜택을 받기 어려운 실정임.

이에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0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피해금액에 농업·임업·어업·염생산업(鹽生産業) 및 소상공인 시설 등의 피해를 포함시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(안 제60조제4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제1항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다음 각 호의 피해를 산정하여 피해금액에 반영한다.
- 1. 주 생계수단인 농업·어업·임업·염생산업(鹽生産業) 및 소상공인의 시설
- 2.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피해규모 산정에 관한 적용례) 제6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발생한 재난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제60조(특별재난지역의 선포) ① | 제60조(특별재난지역의 선포) ① |
| ~ ③ (생 략) | ~ ③ (현행과 같음) |
| <u><신 설></u> | ④ 제1항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|
| | 선포 시 다음 각 호의 피해를 |
| | 산정하여 피해금액에 반영한다. |
| | 1. 주 생계수단인 농업·어업·임 |
| | 업·염생산업(鹽生産業) 및 소 |
| | <u> 상공인의 시설</u> |
| | 2.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|
| |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|